

송도국제도시 F20-1BL 더샵 송도프라임뷰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주요정보

(분양문의) 1670 - 0629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없음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미적용			민간(대규모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16(수)		2025.07.21(월)	2025.07.24(목)	2025.07.25(금)		2025.07.31(목)	

1

공통유의사항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2022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로서 반드시 현장 주변, 단지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완료된 아파트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운영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전 당첨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양세대를 방문예정이며 일정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완료된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의 조건으로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 전 계약대상 동호를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확장, 추가선택 품목, 홈스타일 초이스 등 변경 불가, 현시설물 상태 수락 기준의 계약)
- 본 주택은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승인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에 따라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본 주택과 관련한 분양대금 및 제세공과금 완납 후 가능) 완료 후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는 잔금대출 알선을 하지 않으며, 청약 전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한도 등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을 고려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hesharp.co.kr> 입주단지 목록 내 '더샵 송도프라임뷰')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16(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32**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8.29.(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711**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7.21(월)	2025.07.24(수)	2025.07.24(목)	2025.07.31(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장소: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0번길 11 더샵송도센트럴파크3차 상가A동 132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15466 호(2025.07.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9, 109-2번지(F20-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37층 5개동 총 662세대 중 잔여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 대지면적 : 40,387.0㎡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해당 주택의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납부완료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5930032	01	107.4500A	107A	107.4500	36.0020	143.4520	76.3618	219.8138	70.2340	1	1
	합 계									1	1

■ 공급금액 표

(단위: m²,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수	층구분	아파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 시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30일 이내
107A	2002동 3202호	32층	384,876,800	420,112,000	42,011,200	847,000,000	84,700,000	762,300,000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30일 이내
107A	11,000,000	1,100,000	9,900,00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약식표기	동	호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30일 이내
107A	2002	3202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주방+침실2+침실3+침실4)	5,000,000	500,000	4,500,000

※ 거실 및 침실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각1개소 기본제공품목이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선택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주방+침실2+침실3+침실4)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세대별 인지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대해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연체료는 잔금일 익일부터 발생하며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품목(추가선택품목, 홈스타일초이스, 현시설물 상태 수락 기준의 계약) 경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승계 거부 시 계약불가)

※ 본 주택은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로서 사업주체는 잔금대출 알선은 진행하지 않으며, 청약 전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등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을 고려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정에 따라 공급금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관리비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금액(분양대금),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추가선택품목)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 금액(분양대금)	KEB하나은행	375-910030-46904	신한자산신탁(주)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추가선택품목 금액	우리은행	1005 - 703 - 790496	(주)포스코이앤씨

※ 모든 공급금액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입금하시고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입금 예시 : 2002동 3202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 '20023202홍길동')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공급대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 등의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공급금액 중 계약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o.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발코니 확장공사금액+추가선택품목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재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균등 분할 납부금액	
납부세액	150,000원	사업주체	분양계약자
		75,000원	75,000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계약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 본인에 한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23(수) ~ 2025.08.0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7.2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 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필수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전체발급"선택하여 발급
		○		배우자	• "전체발급"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전체발급"선택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서류[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참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제3자 대리인	○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처 비치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접수장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반공급	- 일시 : 2025.07.24(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7.25(금) (10:00~16:00) -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0번길 11 더샵송도센트럴파크3차 상가A동 132호	- 일시 : 2025.07.31(목) (10:00~16:00) -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80번길 11 더샵송도센트럴파크3차 상가A동 132호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등·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필수서류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계약금입금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아파트 계약 위임용)
	○		• 대리인 신분증,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모든 서류는 금회 **불법행위재공급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7.16(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신청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국가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9	기타사항
---	------

■ 참고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08.29.)을 확인하시어 모든 유의사항 및 단지어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및 입주완료 되었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등 시공상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개방일정은 당첨자 개별통보 예정)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illegibl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태원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주)해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한일엠이씨	
감리금액	3,210,128,900	522,832,620	297,627,000	122,177,000
사업자등록번호	122-81-61820	129-86-17145	106-81-27344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수탁사	위탁사	
상호	신한자산신탁(주)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주)포스코이앤씨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상가 에이동 3층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4-0037603	174611-0002979

-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08.29.)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문의 : 1670-0629 (※평일 : 10:00 ~ 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2:30)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